

2020년도 제8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5. 25.(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오영주,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8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971건(안건번호 제2020-30107호~3184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30107호는 민원인이 촬영한 상품 이미지를 쇼핑몰 입점 판매자가 무단 이용한 사안임.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한 상품 이미지가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더 이상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점, 해당 이미지가 별도로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30108호~30140호는 밴드명만으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밴드에서 영화를 제공한 사안임. 최근 개봉한 영화를 제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밴드에서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점, 동일한 복제·전송자가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점,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거나 회원 가입만 하면 게시물을 볼 수 있어 해당 밴드의 폐쇄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0141호~30189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자동인증, 크래킹 파일 또는 제품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875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55건(안건번호 제2020-2219호~2253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7개 안건은 가결하고, 나머지 38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35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8개 안건(5개 안건은 부결 사유 중복)}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8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8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전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6쪽의 블로그명, 저작물명, 게시물 내용, 9쪽의 밴드명, 저작물명, 업체명, 10쪽의 저작물명, 밴드명, 밴드 소개글, 12쪽의 밴드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안전인 정보 제공 청구 심의에 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9쪽~36쪽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해당 안전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 청구인의 대리인이 부결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함. 다음 심의부터는 청구인명, 저작물명을 비식별하여 부결 사유를 알 수 있게끔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고자 함.
- A 위원: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을 비식별 한 후 공개하려면 안전마다 부결 사유를 적시해야 함.
- 성원영 전문위원: 청구인이 부결 사유를 알고자 하는데 이를 거절할

이유나 근거가 없음.

- A 위원: 정보 공개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것과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다르므로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후에 이것이 정보 제공 청구인들에게 가이드라인처럼 작용될 수 있음.
- B 위원: 회의록 대신 의결 목록과 부결 사유만 간단히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A 위원: 제1호 안전의 해당 부분은 민원 내용으로 비식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게시물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해야 함.
- D 위원: 제2호 안전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비공개 하고, 비공개 쪽수를 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임.
- B 위원: 같은 생각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블로그명, 저작물명, 게시물 내용, 밴드명, 업체명, 밴드 소개글은 비식별 처리함.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9쪽~36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위너브라더스', '소니 픽쳐스', '유니버설픽쳐스', '월트디즈니컴퍼니', '넷플릭스'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소송대리 내지 보호활동, 조정,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님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30107호~31843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2,971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0107호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신고한 건임. 민원인이 촬영한 제품 이미지를 쇼핑몰 입점 판매자가 동일 제품 판매를 위해 무단 사용하고 있는 사안임.
(민원인이 제출한 원본 이미지를 제시하면서)민원인은 자신이 해당 이미지의 권리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상표등록증, 대

표이미지 원본 파일을 제출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직접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심의 대상 게시물의 이미지는 현재 민원인이 제출한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로 변경되었음. 민원인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한 후 변경된 것으로 보임. 민원인은 변경된 이미지 또한 민원인 회사의 제품 또는 보상을 받은 고객이 작성한 후기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함.

- D 위원: 현재 채증화면 상 이미지는 교체되기 전 이미지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채증화면의 이미지는 교체 후의 이미지임. 민원인은 교체된 이미지도 본인의 권리를 가지는 이미지라고 주장하고 있음.
- C 위원: 일전에도 심의위원회가 일관되게 부결해왔던 사안들과 비슷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예를 들면 병행수입업자들이 업로드한 게시물에 대해 독점수입업자가 문제제기를 한 사안이 있음.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0-30107호는 병행수입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사안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안전은 병행수입에 대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의 상표권과 관련하여서는 타 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 C 위원: 해당 사안은 사적 분쟁에 해당하므로 심의위원회가 관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임. 해당 이미지에 대한 권리자도 명백하지 않음.

- B 위원: 민원인이 유통업자인지 제조업자인지도 불분명함.
- C 위원: 우선 민원인이 저작권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함.
- B 위원: 해당 이미지의 저작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 C 위원: 본 건 이미지 자체가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명확하지 않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3010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안건번호 제2020-30107호는 저작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개인 간의 분쟁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임.
- B 위원: 민원인이 문제 제기한 상품 이미지는 더 이상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며, 해당 이미지는 상업적 홍보 이미지로 저작물성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생각함.
- D 위원: 해당 제품 사진은 저작물성에 의문이 있고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게시물의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사적 분쟁으로 해결함이 타당해 보임.
- C 위원: 민원인이 저작권자인지와 상품 이미지에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해당 이미지가 별도로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음. 안전번호 제2020-30108호~30140호의 밴드 회원 수는 모두 100명을 초과하므로 시정권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B 위원: 모두 검색되는 밴드이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 하는 것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30108호~3014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밴드 영화 게시물들은 밴드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밴드들은 모두 회원 수가 상당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 C 위원: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거나 회원 가입만 하면 게시물을 볼 수 있는 밴드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를 제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복제·전송자가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B 위원: 정당한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밴드를 통하여 공중에게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0108호~3014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0141호~3018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총 61건 게시물임.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어도비사의 'Photoshop',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Office', 한글과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오토데스크사의 'AutoCAD' 등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안건표를 제시하면서)해당 안건표에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명, 게시자, 게시물수, 버전, 저작권사, 무료 체험용 제공 여부, 특이사항이 정리되어 있음.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소프트웨어 복제물의 버전은 대부분 2020년임. 해당 권리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인증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저작재산권자가 본 건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복제·전송을 허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대법원은 이른바 '오픈캡처' 사건에서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안건표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 중 자동인증, 무설치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라이선스 인증이 요구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과 해당 프로그램을 크래킹하는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크래킹 프로그램, 라이선스 키 등의 제공 행위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라고 보기 어

렵지만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의 전송에는 해당할 수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30141호~3018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정당한 관리자가 아닌 자가 공중의 이용에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 A 위원: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과 함께 이용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자동인증, 크래킹 파일 또는 제품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0141호~3018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0190호~31843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음악 '주라주라 (가수: 둘째이모 김다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30224호는 2020. 5. 1.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에서 9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음원은 앨범 '주라주라'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박스 2020년 05월 17일 실시간 TOP 100 [00시 기준][320K]' 압축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 100곡 이용 가능함. 참고로 해당 실연자는 작사에 참여하였음.

(음악 'Zombie (가수: DAY6 (데이식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30269호는 2020. 5. 11.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에서 9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음원은 앨범 'The Book of Us : The Demon'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멜론 2020년 05월 16일 실시간 TOP 100' 압축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 100곡 이용 가능함.

(음악 'Please Don't Cry (가수: 다비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30368호는 2020. 5. 3.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에서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음원은 앨범 '더 킹 : 영원의 군주 OST Part 6'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다비치 - Please Don't Cry 외 3곡' 압축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 1곡 이용 가능함. 참고로 방송 '더 킹 : 영원의 군주'는 SBS 채널에서 2020. 4. 17.부터 방영 중인 드라마임.

(게임 '블랙 메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30425호는 2020. 3. 6. 출시된 게임을 웹하드에서 69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게임물의 배급사는 '크로우바 콜렉티브'이며, 정품 판매가는 약 20,500원임.

(게임 '시티즈: 스카이라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30449호는 2020. 3. 26. 출시된 '시티즈: 스카이라인 노을향'을 웹하드에서 7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게임물의 배급사는 '패러독스 인터랙티브'이며, 정품 판매가는 약 15,500원임.

(만화 '원피스 (출판 : 대원씨아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30512호는 2017. 2. 1. 출간된 '원피스' 83권을 웹하드에서

4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웹하드에서 '원피스 1~83권, 이후 979화까지, 매거진, 스펀오프 포함' 압축 파일을 제공 중이며, jpg 파일로 이용 가능함. 참고로 해당 만화는 총 94권 미완결인데, 정품 단권 판매가는 약 2,700원임.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30867호는 tvN에서 2020. 3. 12.부터 방영 중인 방송 프로그램 10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81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드라마는 목요일 오후 9시에 방영 중이며, 총 12부작임.

(영화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31278호는 국내에서 2020. 3. 5.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내 개봉이 연기된 영화를 웹하드에서 380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에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미국에서는 2020. 3. 6. 개봉하였음.

(영화 '트롤: 월드 투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31284호는 2020. 4. 29. 극장과 VOD로 동시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2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5. 22. 현재 상영 중임. 참고로 해당 영상물은 한국어 더빙판임.

(영화 '마이 스파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31807호는 2020. 4. 29.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86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5. 22. 현재 상영 중이며, 한국어 더빙 및 자막을 포함하여 2020. 5. 20.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해당 영상물에는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영화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31798호는 2020. 5. 1. 재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335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5. 22.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상물에는 smi 자막 파일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해당 영화는 1993. 12. 24. 개봉한 기존 극장판 '패왕별희'에서 15분가량 늘어난 버전임. 개봉명이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로 바뀌어 재개봉하였음.

최근 해당 영화의 불법복제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30190호~3184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A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 D 위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0190호~31843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0107호는 부결함. 그 밖에 안전번호 제2020-30108호~3184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6면부터 26면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219호~2253호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7개의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기로 의결하되, 나머지 38개 안전{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35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8개 안전(5개 안전은 부결 사유가 중복)}은 부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8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8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6. 1.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